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공원30114- ⁸⁷	(전화: 731-6411)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 5. 3. 1.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영구.		
시행일자	86. 10.	<i>Handwritten signature</i>	
보조 기 판	부시장	<i>Handwritten signature</i> 법무담당관 2시안심사실 약799호	서통계
	환경녹지국장		3월
	공원과장		1986. 11. 04
기안책임자	공원관리계장 (이갑한)	발신명	인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시	장
제 목	한강 낚시터 사용료 결정고시		
제1안	<i>Handwritten: 고시제 799 회</i>		
수신	: 내부결재		
제목	: 같은전		
	1. 한관 22130-222('86.10.7)와 관련임.		
	2.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백 제6조 별표2규정에 의한 공원시설		
	사용료를 벌첨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시보에 고시코자 합니다.		
	('86. 10. 27. 서울시 사용료, 수수료 조정심의회 심의)		
첨부	: 1. 고시문 (안)		
	2. 사용료, 수수료 조정심의 결과. 금.		

제2안

추신 : 공보관

제목 : 같은건

1.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사용료를

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 조치하기 바람.

첨부 : 고시문. 끝.

제3안

수신 : 한강관리사업소장

제목 : 같은건 결정통보

1. 한관 22130-222('86.10.7)에 의거 전달한 한강낚시터

사용료를 별첨과 같이 결정 하였기 통보함.

첨부 : 사용료 결정내용 1부. 끝.

도시공원 시설 사용료 결정

도시공사 1986. 11. 28.	제 414호
담당자 박서영	업무담당관
장소	건보
	74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6조 별표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시설
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명목담당한 것으로
 이 도시공원에 관한 것으로 도시공원법 제
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, 또한 도시공원
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, 특히
 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, 또한 도시공원
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, 특히

1986.

서울특별시장

구분	시설명	사용구분	금액	비고
기타시설	한강 낚시터 사용료	1회	500 원	

都市公園法

<2條>

2. “公園施設”이라 함은 都市公園의 效用을 다하기 위하여 設置하는 다음 각호의 施設을 말한다.
- 가. 道路 또는 廣場
 - 나. 花壇·噴水·彫刻 등 造景施設
 - 다. 休憩所·長椅子 등 休養施設
 - 라. 그네·미끄럼틀·砂場 등 遊樂施設
 - 마. 庭球場·水泳場·弓道場 등 運動施設
 - 바. 植物園·動物園·水族館·博物館·野外音樂堂 등 教養施設
 - 사. 停車場·賣店·便所 등 利用者를 위한 便益施設
 - 아. 管理事務所·出入門·울타리·담장 등 公園管理施設
 - 자. “가”目 내지 “아”目 以外에 都市公園의 效用을 다하기 위한 施設로서 建設部令이 정하는 施設

第 14 條 (入場料 등의 徵收) ① 公園管理廳 (第 6 條

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하는 者를 包含한다) 은 都市公園에 入場하는 者로부터 入場料를 徵收하거나 公園施設을 使用하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.

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場料를 徵收할 수 있는 都市公園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이상의 公園施設을 設置한 것에 한한다.

③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入場料 및 使用料의 金額과 그 徵收方法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當해 公園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

○ 동행시행계획

제 2 조 (공원시설의 종류) 법 제 2 조제 2 호

"자"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조경시설 : 관상용 식수대 및 잔디밭 · 산물다리
그늘시렁 · 못 · 폭포 · 등봉 · 정석 · 정십다리
2. 휴양시설 : 야외탁자 · 야외회장, 야영장 · 노인정 · 노인회관
3. 유희시설 : 시소 · 정글짐 · 사닥다리 · 수병순환회전차 · 경산순환회전차 · 수직순환회전차 · 모노레일 · 삭도 · 도설지 · 주유지 · 낚시터
4. 운동시설 (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) : 야구장 · 축구장 · 농구장 · 배구장 · 육상경

○ 시흥시 도시공원관리 6조

<별표 2>

공원및 공원시설 사용료

(개정 85. 5. 22 조례 2004)

공원별	종 별	사 용 기 준	금액(원)	비 고
공 통	운동장사용	1회 3.3m ² 당	15	
	사진관영 (상시영리 행위)	1인 1년당	110,000	
	영 화 관 영	주간 1회당	55,000	야간은 주 간의 2배
	녹 차	1시간당 초과 시간당	11,000 5,500	
	유희시설 운동시설 기타시설	인근시설 사용료의 90%이 내에서 시정이 반드시 경 함. 단, 사유지상 민자사 설 사용료는 인근시설 사 용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정이 승인함		

고시요금

종	번	구	분	금액	비	고
유 회 시 선	요술외전, 회전 복마, 아기차, 이층복마					
	과학놀이	1 회		100	쿠폰사용 시 10% 할인	
	유 모 차	1 회 3 시간 한하여 1 시간 초과시마다		500 100		
	조랑말승마	1 회에 대하여 (코스 1 회전)		550		
한 강 시 민 체 육 공 원	정 구 장	민당 1 회사용 (1 회는 1 시간 이내)		270 300		
	축 구 장 야 구 장	민당 1 회사용 (1 회는 2 시간 이내)		2,750 3,000	단체독점 사용시 적용	
	배 구 장 농 구 장	"		1,100 1,200	"	
	배드민턴장	"		1,200 550	"	